2021년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

- 최 종 보 고 서 -

2021. 11.

상주시의회
SANGJUCITYCOUNCIL

제 출 문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귀중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1.

KMRI 계명마케팅연구소

참 여 의 원		
대 표 의 원	:	신 순 화
의 원 진	:	조 준 섭
	:	최 경 철
	:	이 승 일
	:	이 경 옥

참 여 연 구 진		
책임 연구원	:	김 민 지
수석 연구원	:	곽 주 완
선임 연구원	:	조 남 수
연 구 원	:	전 유 돈
	:	강 상 훈
연구 보조원	:	박 지 영
	:	조 은 진

CONTENTS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내용

Ⅱ.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상권별)

1.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활동
2. 중심상권 통합운영 추진협의회 구성
3. 상권별 의견 및 추진사업 도출

Ⅲ.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상권통합화)

[단계별 프로세스]
1단계)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2단계) 구역지정
3단계) 조례정비 및 지원기구 설치
※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신청** (별첨 : 직전 공모양식)

Ⅳ. 상주시 중심상권 발전방안 제시

1. 상주시 중심상권 융합방향성 및 목표(안)
2. 상권별 추진사업(안)
3. 상주시 중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
4. 상주시 조례정비(안)

Ⅴ. 기대효과 및 기타 참고사항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상주시 원도심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상주지역을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성 제기

◦ 상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대책방안 요구 증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쇠퇴상권에 대한 '상주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필요

1.2 연구추진 방안의 타당성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70여건과 전통시장 상인교육 수행 8,000여명 등 전통시장 관련 어느 기관과 비교되지 않을 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시 핵심상권의 문제점을 상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 상인회 임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지원된 상권별의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상주시 상권별 관리, 지원, 유지보수, 새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재로서 상주시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주시 핵심상권들의 융합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연구소로 연구추진의 타당성을 가짐

1.3 연구 추진의 목적

◦ 경상북도와 상주시 및 정부는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상인교육, 상권육성, 마케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상인의식 미흡, 시장 규모의 한계, 시장 시설환경의 구조적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

- 그간의 법적 미비, 지자체의 중장기계획 미흡, 관련 법규의 실효성 논란 등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더불어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 **중형 마트 및 온라인 쇼핑 확산, 교통편의성 증대** 등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주장
- **전통시장 및 인근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개선,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되어 **핵심 상권들을 융합**하여 **규모화 및 특화**를 통한 **새로운 대안 필요**
- **전통시장 및 인근상점가**의 현황, 기반시설,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주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 및 발굴,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더불어 **통합**을 통해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연구활동 접근방법

[1] 상권이 복원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대안 마련
[2] 상권 복원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1.5 연구활동의 기본 개념

상주시 중심상권 혁신방향 : 상주시 공유경제의 허브공간화

1.6 연구활동의 목표 및 전략

[1] 상권 융합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2] 현실적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 마련

통합을 위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상권별 방향성 제시

□ 상주시 주요시장 및 상점가 각각의 활성화 기반마련

□ 목표 : 상주시 주요상권 융합발전 기반조성

□ 추진과제 : 상권통합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전략 : 상권특성에 따른 활성화 사업 도출 및 방안 제시

◦ 상권별 특성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제시

◦ 통합에 따른 시너지 유발 효과 도출 및 상권운영방안 제시

1.7 연구활동의 창의성

◦ 본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의 전략은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시장별 규모와 업태로서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핵심상권들을 통합하여 지역상권활성화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도출 전략은 진단 ⇒ 전략수립 ⇒ 기본구상(우선순위자원, 역량의 집중) ⇒ 추진체계(상권기구) ⇒ 재원조달계획 ⇒ 지속화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1.8 고려사항

◦ 상주시의 상권들은 과거로부터 한 울타리 내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의 자리매김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유통 채널(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SSM 등)의 등장과 소비자의 소비트랜드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함으로 상권이 고령화와 고착화 진행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시장 내 상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품목 전문화와 가격표시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피하고 있으며, 경쟁력 저하의 내외적 요인으로는 ㉠점포의 비전 부재, ㉡상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저하, ㉢상인의식 미흡과 고령화, ㉣점포 경영에 따른 투자 미흡, ㉤상품의 전문성 결여, ㉥시장관리 규약 미흡이며, 외적요인은 ㉠영세상인 보호측면에서 봐주기(위생 점검, 품질 관리, 사업자등록증)로 인한 상인 스스로 자생력 확보 기회 상실, ㉡유통환경 변화 즉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 ㉢소비자의 유통업태 선택의 기준 변화, ㉣쇼핑환경 저하(점포 시설, 시장 외부환경, 주차장 및 편의시설)에 원인이 있어 전체상권의 활성화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최종 목표는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2. 연구내용

□ 연구주제 :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연구

□ 연구활동기간 : 2021년 5월 ~ 11월(6개월)

◦ 내용적 범위

- **당면 현안 문제 해결방안 및 상권 활성화 유도정책 방향성 제시**

◦ 공간적 범위

- 상주시 주요시장 및 상점가

시장명	매장면적 (㎡)	점포수	상인수	구분	대표자	개설일	연락처
중앙시장	5,572	158	153	사설	김정호	1987.06.18	010-8876-****
풍물시장	4,595	58	58	사설	김충언	2013.12.26	010-3507-****
남성시장	9,882	130	120	사설	안두호	2019.11.18	010-3536-****
왕산상점가	14,980	109	109	사설	이현석	2020.6.24.	010-8792-****

2.1 연구방향

◦ 기존의 상권 환경변화에 따른 상주시 시장 및 상점가의 융합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

◦ 서민경제 공간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등으로 지속발전 사업 구현

2.2 연구내용

□ 실현가능한 "자생, 상생, 재생" 상권활성화 방안 검토

□ 상권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융합 발전방안 방향성 제시

◦ 상인조직별(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실태조사

◦ 상인조직별 상권통합(상권활성화구역) 방안제시

◦ 상권 내 상인조직별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

◦ 상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행 근거 마련

◦ 대안 제시를 위한 조사·분석은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개연성 확보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공통의견 수렴

2.3 연구추진계획

월 별	계 획 내 용
2021.05	연구활동 설명회 개최, 현장회의 및 의견수렴 대상구역 현황조사·분석
2021.06	대상구역 현황조사·분석, 1차 간담회
2021.07	상권별 진단 및 유형발굴, 현장회의 중심상권 구심적 기능검토
2021.08	융합발전 목표 및 방향성 검토, 2차 간담회
2021.09	통합운영방안 제시, 상권별 사업지원 방향성 제시
2021.10~11	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

2.4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활동

의회 회의	연구활동 사전설명회
연구활동 주요의견(신순화 의원)	**연구활동 주요의견(이경옥 의원)**
연구활동 주요의견(이승일 의원)	**중심상권 통합운영 구역(안) 설명회**

상권통합운영의 필요성(곽주완 교수)	상권별 의견수렴
조례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의	상주시 상권통합운영의 기반(조남수 연구원)
상주시 의견수렴	현장검토(김민지, 조은진 연구원)
현장검토(김민지, 조은진 연구원)	현장검토(김민지, 조은진 연구원)

중앙시장 현장회의	중앙시장 현장회의
풍물시장 현장회의	풍물시장 현장회의
남성시장 현장회의	남성시장 현장회의
왕산상점가 현장회의	왕산상점가 현장회의

Ⅱ.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상권별)

1. 상권별 구역현황

1.1 중앙시장(등록시장)

- 개설(등록)일자 : 1987.06.18
- 위치 : 남성로 37-6 일원 (구역면적 : 11,338㎡)

1.2 풍물시장(등록시장)

- 개설(등록)일자 : 2013.12.26
- 위치 : 상주시 풍물시장길16 일원 (구역면적 : 7,986㎡)

1.3 남성시장(인정시장)

- 개설(인정)일자 : 2019.11.18
- 위치 : 상주시 남성4길 43 일원 (구역면적 : 18,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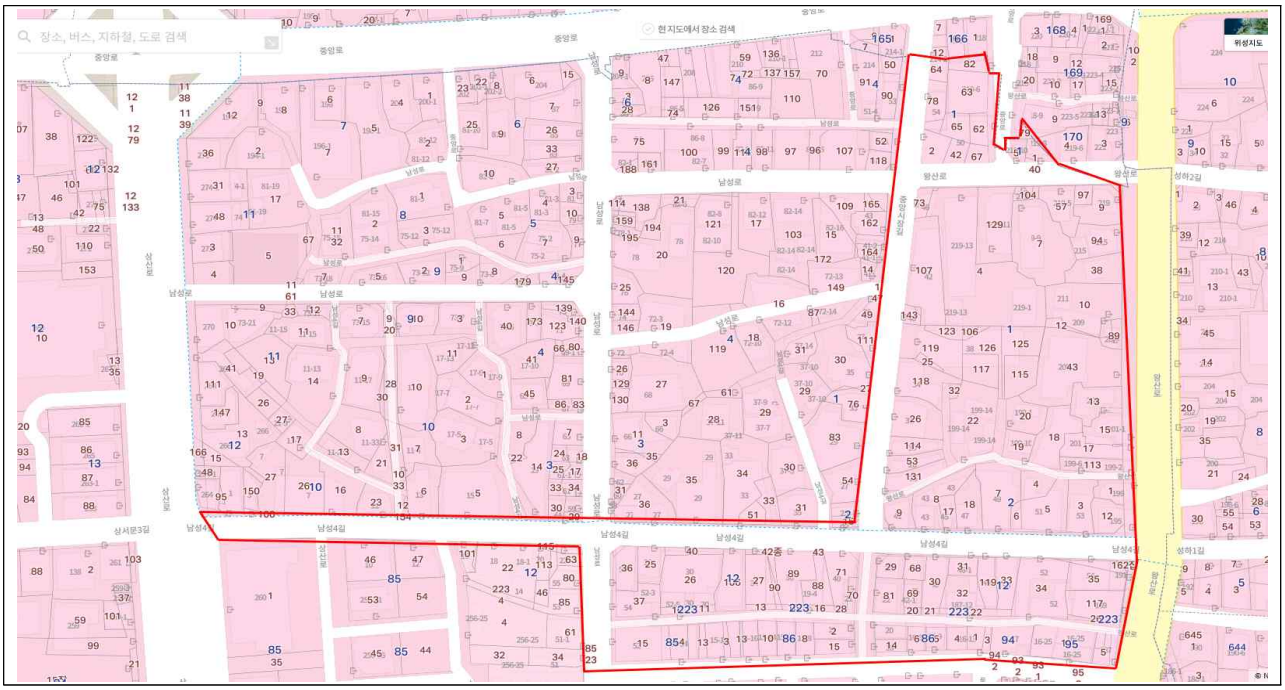

1.4 상주왕산상점가(상주왕산상인회)

- 개설(인정)일자 : 2020. 5. 29(2020. 6. 25)
- 위치 : 상주시 서성동 146-23번지 일원 (구역면적 : 15,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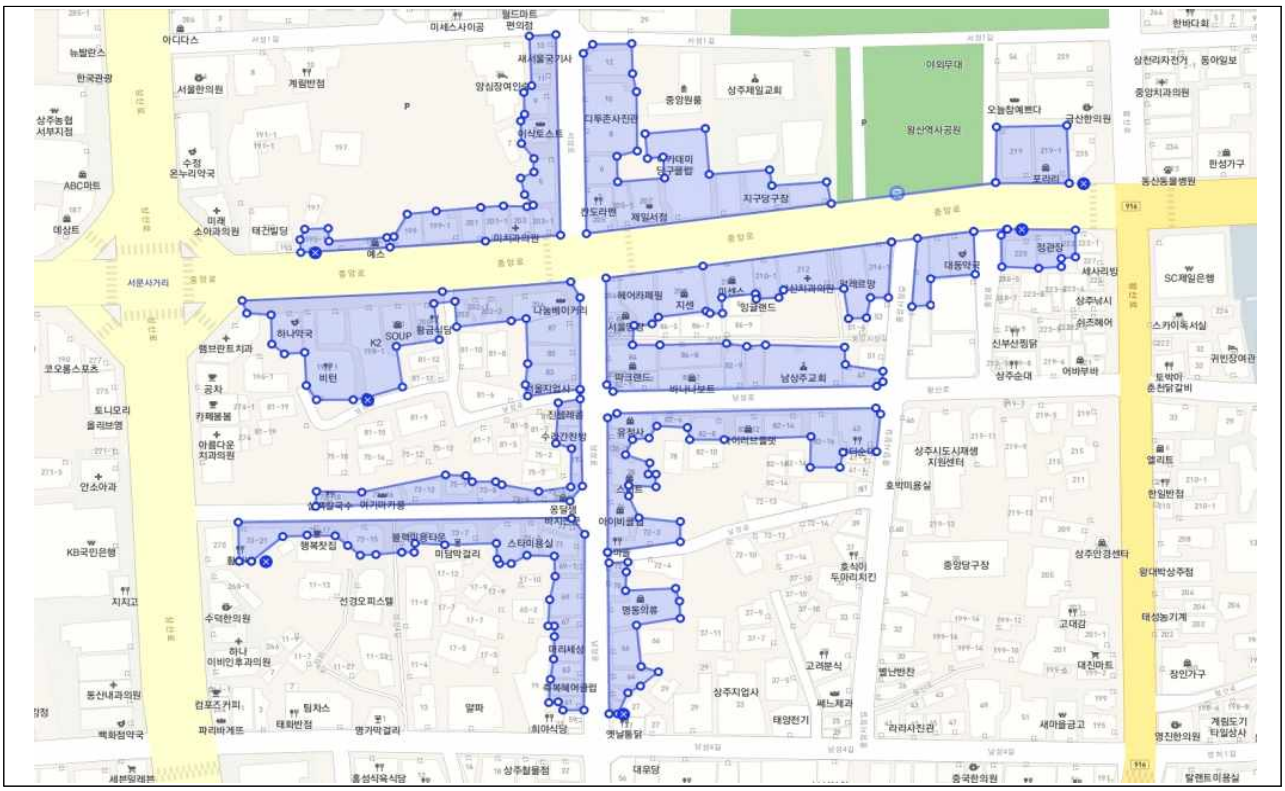

2. 상권별 사업현황 (2018~2021 현재)

2.1 상주중앙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사 업 비: 1,540백만원(국50%, 도15%, 시35%)
- 사업기간: 2016년~2018년
- 주요내용: 공간디자인 환경개선, LED조명개선, CCTV개선 등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사 업 비: 126,400천원(국비 88,480, 시비37,920)
- 사업기간: 2018년~2020년
- 주요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 **전통시장 소방도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100백만원(도비 50, 시비50)
- 사업기간: 2020년
- 주요내용: 시장 내 노면상태 불량인 소방도로 아스콘포장 및 도막공사

○ **시장매니저지원사업**
- 사 업 비: 17,460천원(국비12,222, 시비5,238)
- 사업기간: 2020년
- 주요내용: 시장매니저 채용지원

○ **공동마케팅지원사업**
- 사 업 비: 22,001천원(국비17,778, 시비4,223)
- 사업기간: 2020년
- 주요내용: 가을고객감사 잔치 방역용품, 홍보용품 지급 등

○ **전통시장 소방도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87,100천원(도비26,130, 시비60,970)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노면상태 불량인 소방도로의 아스콘포장 및 도막공사

○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 사 업 비: 150,000천원(국비75,000, 시비,60,000, 한전15,000)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선 정비, 분전반교체 등

○ **중앙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 사 업 비: 150,000천원(국비75,000, 시비60,000, 한전15,000)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선 정비, 분전반교체 등

○ **중앙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 사 업 비: 340,534천원(도비170,267, 시비170,267)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주요내용: 연기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소방시설 정비

2.2 남성시장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사 업 비: 60,000천원(국비 42,000, 시비18,000)
- 사업기간: 2020년
- 주요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비: 595,711천원(도비297,856, 시비297,856)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주요내용: 개별점포 스토리 간판제작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 사 업 비: 38,667천원(국비30,000, 시비8,667)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2.3 왕산상점가

○ **도심문화예술축제**
- 사 업 비: 4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왕산도심 내 공연문화 행사 및 체험행사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 사 업 비: 49,778천원(국비40,000, 시비9,778)
- 사업기간: 2021년
- 주요내용: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3. 상권별 의견 및 도출내용

3.1 상권별 의견

상 권 명	내 용 및 의 견
중앙시장	• 주차시설 확충 • 주차장-시장에서 운영, 수익을 원함
풍물시장	• 상인회 집결지 및 사무인력 원함
남성시장	• 상인, 고객 편의시설 확충 원함 • 아케이드 및 공용화장실, 쉼터 등
왕산상점가	• 상인회 운영 참여인력의 협조 및 안정화 원함

3.2 상권별 추진(가능)사업 도출

상 권 명	내 용
중앙시장	•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수익사업 기반 조성
풍물시장	• 상인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남성시장	• 편의시설 확충 및 사업기초기반 마련
왕산상점가	• 관광자원과 연계 방전방안 모색

Ⅲ.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운영방안 연구(상권통합화)

1. 단계별 프로세스

1 중심상권 통합운영 추진협의회 구성 (2021.07.09. 구성)

□ 조직도 (상인조직의 자립 가능한 상설 조직화 방안)

2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상권활성화 구역 적합성 검토)

□ 구역 지정의 법적 요건(전통시장특별법 제2조제4호)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구역 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구역 내 700개(인구 50만미만 시·군·구는 40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
- ○ 구역 내 매출액(구역내 시장 기준), 인구.사업체수(행정동 기준) 모두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곳

3 구역 지정 (상인회 구역신청 및 지자체 광역시 · 도에 승인을 통한 구역 지정)

□ 추진배경

- ○ 소상공인 밀집 상권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해 **자생력 제고 필요**

  * 교외 개발, 공공기관 신도시 이전 등으로 원도심 상권 쇠퇴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 약화

- ○ 이에, **상권활성화사업을 도입**하여 임대인·입점상인 등이 스스로 상권관리 및 상권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일부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를 통한 하향식(Top-down) 사업으로 실질적 자생력 배양에는 미흡

□ **주요내용**

○ (**상권관리기구**) 임대인·입점 상인 등이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구역 내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

○ (**지자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조례 제정, 구역 내 분쟁조정, **상권활성화구역 인가 및 지도·감독 등**

○ (**정부**) 상권활성화구역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관련 부처 시책 연계**지원 등

구역지정을 통해 상주시의 상권통합 및 체계적인 운영

□ **구역지정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도의 승인을 받아 구역을 지정

○ 사업계획서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 필요

< 구역지정 절차도 >

※ ▭ : 법에 규정될 절차 ▭ : 시행규칙에 규정될 절차

□ 구역지정 신청 : 상인회에서 상주시로 신청 (구역 대표자 선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11.30.>

첨부서류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수수료 없 음

1. 별지 서식 3호 신청서
2. 구역 경계도
3.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신청사유, 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조달계획

▼

□ 상주시에서 경상북도에 구역지정 신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첨부서류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수수료 없 음

1. 별지 서식 3-2호 신청서
2. 기초 조사서
3. 구역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4. 소요예산 및 조달 계획
5. 구역지정의 효과
6. 구역 경계도
7. 상권 활성화사업
8. 상권 관리기구 운영계획서
9.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0. 상인총회에서 동의한 회의록
11. 주민의견

3 조례정비 및 지원기구 설치 (상권 복원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마련)

◦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검토
◦ 상주시 시장운영 조례 검토 및 상권운영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
◦ 필요시 조례 신규개정 검토

□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경상북도 사업 승인 (지특예산)
* 특별법 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9조(실태조사), 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1절의 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등에 대한 검토
◦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 검토 및 정부의 시장활성화 관련 추진정책
*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까지 30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 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국가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사업 방향 검토

□ **상권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 : 상주시의회를 통해 추진**

상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1. 5.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
개정 2014. 1.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4호
개정 2017. 8.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개정 2018. 8.2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 신규제정 2017. 07. 2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례 : 성남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30.]

(제정) 2011.12.16 조례 제2529호
(일부개정) 2013.06.28 조례 제2717호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에 따름
관리책임부서 : 상권지원과
연 락 처 : 031-729-8972

□ 상권활성화 지원 기구 설치

: 상주시 시장 및 상점가 전체 통합 지원기구로 추진을 권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010-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원도심상권진흥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2.3 상권관리기구

○ 주무관청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

* 근거 :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의2
2) 중소벤처기업 고시 제2018-47호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

□ < 상권관리기구의 개요 >

○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상권관리기구의 역할)**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등 동법 제19조의8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

* 상권관리기구 역할(전통시장특별법 제19조의8 제1항 각호)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상권관리기구 설립 허가 >

○ **(설립신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 **(설립허가 주무관청)**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11조에는 상권관리기구 설립 허가는 **청장**에게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중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상권관리기구 설립 절차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별도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14일 이내)

③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④ 법인(상권관리기구)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

< 설립허가 요건 검토 사항 >

구분	검토내용	세부점검사항 및 규정요건
민법상 설립요건 충족 여부	목적의 비영리성(민법 32조)	.영리성 미보유
	설립자의 재산출연 (민법 제43조)	.출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관 작성 (민법 제43조)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명칭, 사업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설립자의 기명 날인
설립허가 신청의 적합성 여부	설립허가 신청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 신청서 .발기인 이력서 .정관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신청내용의 설립허가 기준 적합성 여부	설립허가기준 (동 규칙 제4조)	.법인목적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보유 및 재정적 기초 확립 가능 여부 .타법인과 동일명칭 미사용

※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

□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 추진위원회 구축(상 권내 시장 및 상점가 대표, 상주시청)
: 전문 연구기관 용역 및 전문가
☞ 지역 중심의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상주시의 경우 계획안 보유)**

□ 상권르네상스 사업신청서 작성 : 공모 양식에 의거
□ 별첨 : 직전 공모양식

Ⅳ. 상주시 중심상권 발전방안 제시

1. 상주시 중심상권 통합방향성 및 목표(안)

1.1 구역지정으로 중심상권통합

○ **목표 :**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

관광을 선도하고 문화를 포용하는 한반도의 빛의 결절지, 상주

○ 문화, 경제 사람이 모이는 도심 공간 창출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상권, 편리한 주거를 향유하는 상권, 활기찬 경제가 살아있는 상권, 다양한 흥미를 유발하는 상권, 여유와 휴식을 누리는 상권

▼

상주 지역 상업·업무·문화 결합 서비스로 부가가치 창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상권별 현황에 맞는 사업진행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경쟁 최소화**

▼

상주시 중심상권의 통합으로 행정과 소통의 일원화

1.2 행정, 소통의 일원화 (갈등제로 공론화시스템 기반조성)

○ 통합매니저 2인 채용으로 4개의 상권 통합 관리 (데이터 공유, 재구조화)

○ 거점으로 적합한 위치에 통합사무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행정서비스 제공)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지원 검토
(국비70%, 지방비 또는 자부담 30%)

○ **상권관리기구 설립** (분석, 활용체계 기반조성)

2. 상권별 추진사업(안)

2.1 상권별 추진(가능)사업

1 **상주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공동수익사업 기반조성 (2020년 기준)**

- 운영관리체계를 바꾸어 사업신청(월주차 운영정리 등)
- 사전컨설팅 진행 또는 연구용역 수행 후(총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필수사항, **복합주차장 계획으로 차별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국비 60%, 지방비 40%)으로 노후문제 해결

- 사업신청시 상인동의 60%이상 동의 필수
- 복합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관련시설로부터 20m 이내 설치 검토
- **수익사업이 가능한 법인시장**으로 주차장 **공동수익 방향성 도출** 가능
- 지속가능한 지역순환센터형 상권 구축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85-36 일대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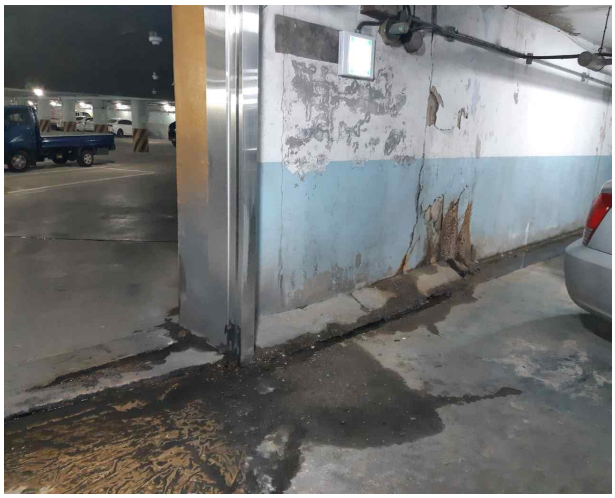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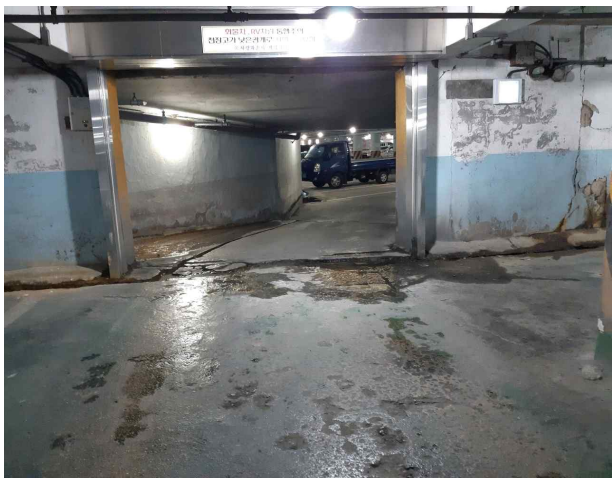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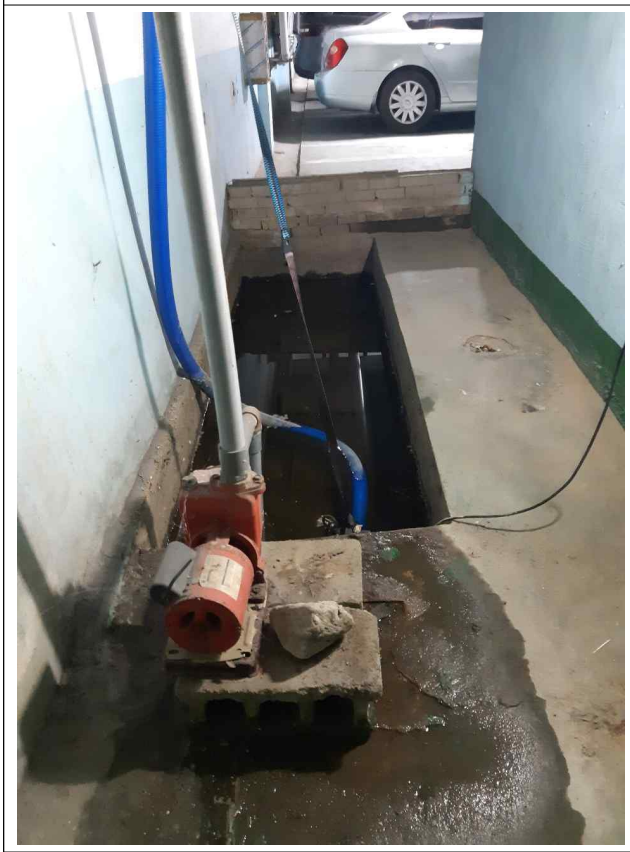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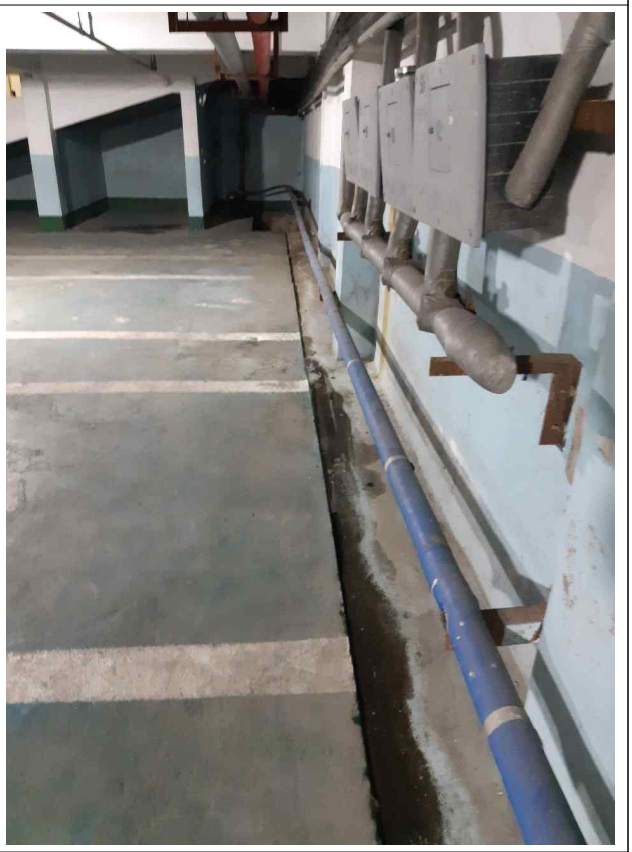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지원 규모 : **주차장 건립 10곳 내외**

2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3 지원내용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시 국비를 보조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가능)

- 주차장 부지 매입,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4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5 지원 요건

○ 주차장 위치 및 건축계획,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요

○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 후 3개월 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 사업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단, 복합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관련 시설로부터 20m 이내 설치 원칙

○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
(단, 1년 내에 완공이 확실시 되는 곳은 단년사업 신청 가능)

* (예시) 1년차 : 설계, 부지매입, 2년차 : 공사 등

⑥ 우선지원 대상

○ 고객 전용 주차장 미보유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7] 우대조건

- ㅇ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 ㅇ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시장

- ㅇ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ㅇ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50%이상 시장

[8] 유의사항

-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 ㅇ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 ㅇ「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고시 제2019-79호)」적용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3.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4.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6.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2 풍물시장 (시장경영바우처) - 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 ○ 매출구조가 좋은 구역으로 시장의 개념보다 점포별 개념이 큼
- ○ 상인분들 **집결지 필요(상인회 사무실 또는 회의실)**
- ○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인력지원 필요
- ○ **경영선진화 사업**으로 사업 및 인력지원 확충

□ 참고자료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이란?

ㅇ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인력자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 프로그램

[2] 사업목적

ㅇ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ㅇ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3] 사업내용

ㅇ 상인회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5개 사업 부문(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경영자문)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ㅇ '19년 기존 5개 내역사업(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배송서비스, 자문)을 통합

ㅇ 온라인 입점 지원, '가치삽시다' 캠페인 확산, 전통시장 안전교육, 상인 워크숍,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 중점 추진사항 별도 시행

구 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사업지원 바우처	공동마케팅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경영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구 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인력지원 바우처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 이벤트·축제·행자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서비스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

4 지원 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사업단을 통해 추진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집행

ㅇ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5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20년 1월 ~ 12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곳 내외

6 지원조건

○ 사업 부문별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상비부문	사업비 매칭비율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90%, 자부담 10%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70~30%, 지방비·자부담 30~70% • 영업점포수 소형(0~299)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 중형(300~799)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영업점포수 대형(800개 이상)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3 남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 편의시설 확충 및 기초기반 마련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총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필수사항)을 통해 **등급확인 및 조정**, 세부계획 검토 후 **시설현대화사업신청**

○ **중앙시장과 왕산상점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역 상권통합의 주축 가능성 보유** (스트리트 퍼니쳐 구축으로 고객접근성 및 환경개선)

* 스트리트 퍼니쳐 구축 : 경관, 조경, 아케이드, 커뮤니티 공간, 공연무대 등

○ 중복사업으로 첫걸음컨설팅(1,500만원, 국비100%)검토

○ **문화향유 거점으로 조성, 문화예술참여 확대 및 지식 공유 장소로 발전**

□ **등급 및 사전컨설팅, 용역수행 등 검토**

□ **참고자료 :**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

유럽의 스마트관광시티

독일의 CityTree

-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ICT 기술 기반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시티 지정을 통해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
- 독일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 및 공기오염도 측정기 센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생태친화적 조형물이며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1 지원개요

○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구·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붙임 2~6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구·군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야 함

ㅇ 아케이드·조형물·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할 것

ㅇ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신청

3 지원내용

ㅇ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ㅇ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ㅇ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ㅇ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ㅇ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ㅇ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ㅇ 안전문제 등 대구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4 신청·선정 절차

ㅇ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제출(시장·상점가 ⇢ 구·군 ⇢ 경상북도) → 현장실태조사(경상북도,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및 종합현장진단(외부전문가) → 경상북도 심의위원회 개최(경상북도, 지방중기청, 현장평가 전문가 등) → 최종선정(우선순위 부여) → 시의회 예산안 제출

5 우선지원 대상

ㅇ 당해연도('22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ㅇ 경상북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시장

*** 구·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우선순위 부여**

* 전체사업 규모의 15%이상을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보수를 위한 신청사업에 우선편성

ㅇ 여름철 폭염 경감시설(쿨링포그, 햇빛 가림막 등) 설치 사업

6 우대조건

ㅇ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ㅇ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ㅇ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ㅇ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지역 관광과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설치 등 공유경제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ㅇ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⑦ 구비서류

ㅇ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붙임 1 서식)

ㅇ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ㅇ 각종 동의서(시설현대화 운영지침 붙임 2~6 서식)

ㅇ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

붙임 1.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2~6. 사업추진 동의서

4 왕산상점가 (특성화사업) -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방안 모색 (2020년 기준)

○ 1차 : 특성화 사업인 **첫걸음사업**
(1년사업, 3억, 국비 40~60%, 지방비 40~60%)**신청**
○ 2차 : **문화관광형시장사업**
(2년사업, 10억, 국비 40~60%, 지방비 40~60%)**신청**
○ 시장사업에 대한 교육이수 경력이 전무한 관계로 순차적인 진행이 필요
○ 지역 내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
○ 전체 상권으로 홍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 부여**
○ 상주 중심상권의 관광마케팅 기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진행

□ **참고자료**

■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① 사업목적

ㅇ 특성화 기반이 미흡한 시장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종합컬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의 원기능 회복지원

2 지원개요

ㅇ (대상) 특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지자체 추진 종합지원사업 등을 일절 지원받지 않은 곳으로서 접수 순 지원

ㅇ (기간) 지원사업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규모) 총 20곳 내외

ㅇ (조건 및 한도)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최대 13백만원 이내
- 국비 100%

ㅇ (예산) 289백만원('20년도 국비 기준)

3 세부지원내용

ㅇ (시장 환경 분석) 현장조사, 리서치 등을 통해 지원시장의 환경과 상권을 분석하고 향후 컨설팅 전략 수립

ㅇ (컨설팅 수행)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시장에 최적화된 5대 혁신과제 강화 관련 종합 컨설팅 실시

ㅇ (도약 지원) 시장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으로 도약방안 제시

■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1 사업목적

ㅇ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기반 구축

2 지원개요

ㅇ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 특성화사업(글로벌 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골목형, 첫걸음기반조성사업 등)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장으로서 아래의 기초역량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공고마감일 기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70% 이상인 곳

ㅇ (기간)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1년간(~'20년 12월)

ㅇ (규모) 총 30곳 내외

ㅇ (조건 및 한도) 시장 당 1년간 최대 3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ㅇ 시장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

ㅇ (예산) 4,500백만원('20년도 국비기준)

3 세부지원내용

ㅇ (3대 서비스 혁신지원) 결제 편의,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온누리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교육,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VMD개선, 아케이드 및 공용 공간 청소, 위생·청결 개선 활동 등

ㅇ (2대 역량 강화지원) 상인조직 강화(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등),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 자율소방대 결성 및 운영, 화재알림시설 및 재난대비 설비 비치 등

ㅇ (문광형시장 도약 준비) 차년도 문광형 상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계획 사전 수립(단, 외부업체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은 불가)

ㅇ (시장 홍보) 서비스 혁신 등 5대 혁신과제 관련 시장의 변화된 모습 홍보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강화

■ 문화관광형시장

1 사업목적

ㅇ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2 지원개요

ㅇ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50%이상)체결된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80%이상인 곳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 완료 시장

ㅇ (기간)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21년 12월)

ㅇ (규모) 총 88곳 시장

ㅇ (조건 및 한도)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국비(40~60%), 지방비(30~60%)매칭,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시장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

ㅇ (예산) 총 88곳 시장, 총 136.2억원(지방비 포함)

[3] 세부지원내용

ㅇ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ㅇ (대표상품 개발)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ㅇ (디자인 접목)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하여 노후된 시설 및 공용공간 등의 활용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 시설현대화, 특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및 공용공간을 지원

ㅇ 지역특산품과 지역장인(匠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 시니어몰 조성 등

3. 상주시 중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

○ **상주시 전체면적 : 1,253㎢ 대비 적정한 면적을 상권구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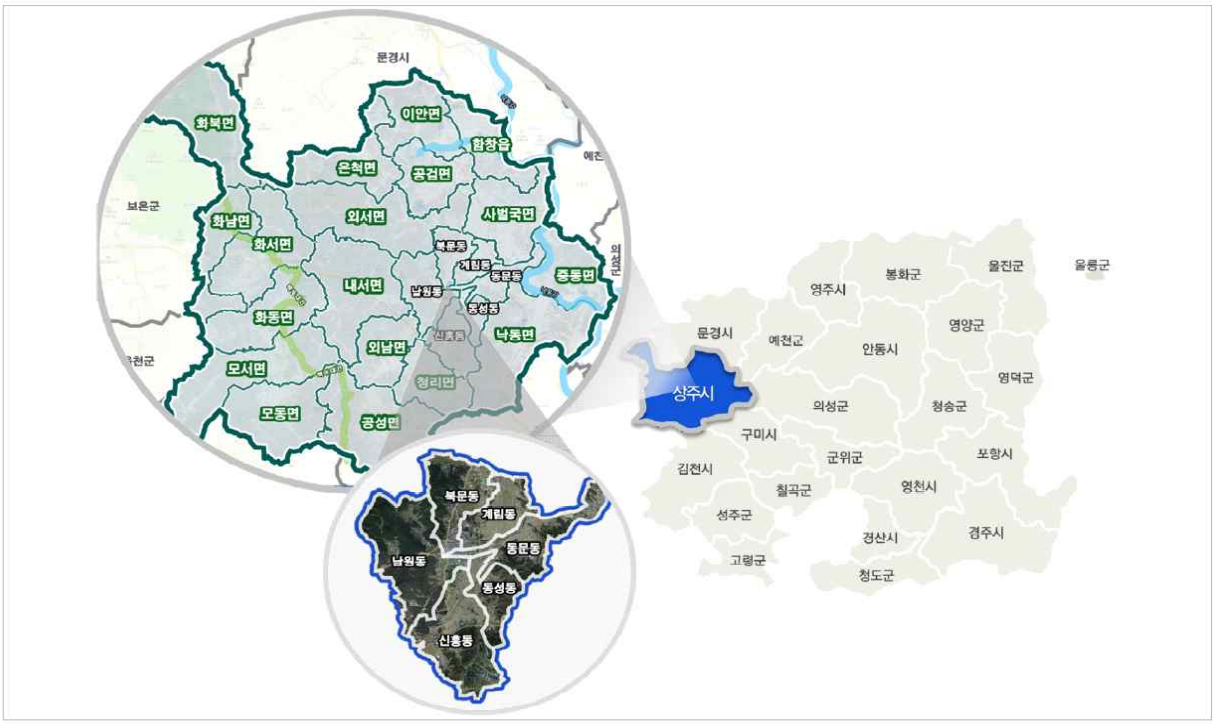

인 구

48,856세대

97,2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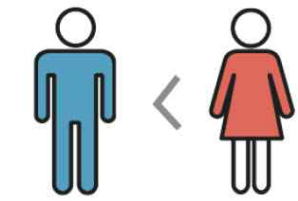

47,634명 (49.0%) < 49,594명 (51.0%)

(2020. 12월 말 기준)

면 적 1,254.61㎢ 전국 6위, 경북 3위, 서울시 2배

행정구역 1읍 17면(4출장소) 6동 513리통 2,191반

< 상주시 중심상권 구역지정 가능 점포수 >

중심상권 구역지정 총 440개 보유 (4개의 상권 점포수 합계)

< 참고사항 >

①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비 설정 후 작성

총점포수 (빈점포 포함)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 표의 점포수(빈점포 포함)은 사업비 설정 참고 기준이며, 상권활성화구역요건의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다름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④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미동의시 구역만 포함, 진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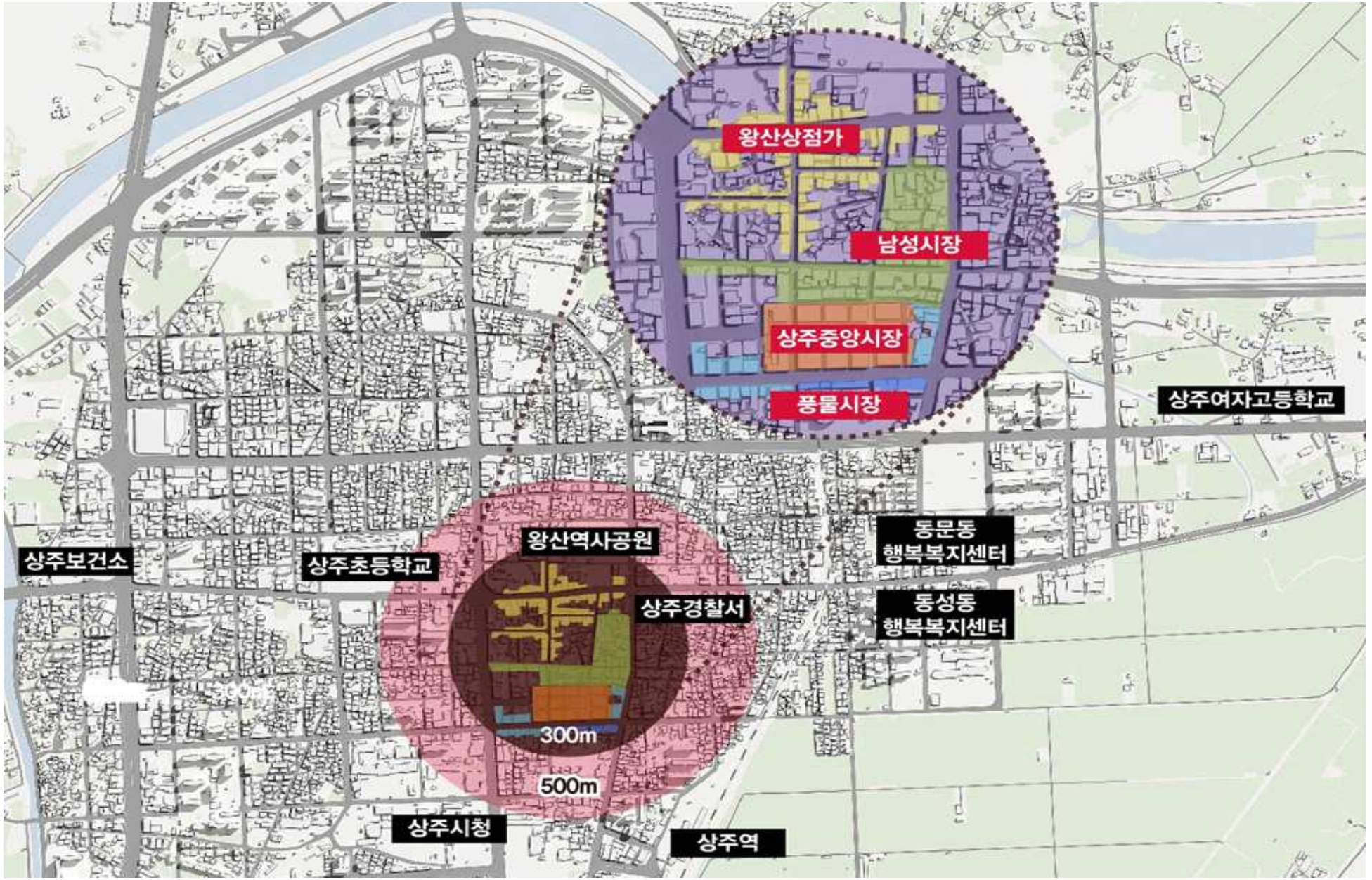
왕산상점가
남성시장
상주중앙시장
풍물시장
상주여자고등학교
왕산역사공원
상주보건소
상주초등학교
동문동
행복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동성동
행복복지센터
300m
500m
상주시청
상주역

4. 상주시 조례정비(안)

[개정 및 제정 조례 안]

1.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제1장 총칙,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법안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이에 기존의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로 변경과

상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신설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예시(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조례]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1.26 조례 제12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상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상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상주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상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수렴 및 이용 편의 보장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의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상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상주시장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시장 상인회의 대표는 전통시장 인증서를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상주시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상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상주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상주시장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의 대표는 상인회 등록증을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상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의 이용료) 상주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주차장법」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주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상주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75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및 제정 조례(안)1]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시행 2021.11.00.]

(제정) 2021. 11. 00 조례 제0000호

관리책임부서 : OOOOOO
연 락 처 : 000-00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전통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전통시장관리자 또는 조직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또는 상인조직·전통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제8조(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도매·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2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제13조(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2개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7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전통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0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5조(상인회의 설립) ① 전통시장·전통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상인회의 등록취소)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비치 등)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서류

제3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

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각종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3조(전통시장 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통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공설시장의 전통시장관리자)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3조에 따라 전통시장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해당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전통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전통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와 시가 설치비용 모두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전통시장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제3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주시 주차장 조례」,「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제3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은「상주시 주차장 조례」및「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

[개정 및 제정 조례 안] 2

상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00.]

(제정) 2021.11.00 조례 제000호

관리책임부서 : OOOOOO
연 락 처 :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상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상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상주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을 스타일이 지정된 아래아한글로 저장

[개정 및 제정 조례 안] 3

상 위 법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 행 령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0. 00.]

(　　제정) 2021.00.001 조례 제　　호

관리책임부서 : OOOOOO
연 락 처 :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지정) ① 상주시(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과 구역내 상인의 1/2이상의 상인회 등록신청에 의거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인회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 및 등록증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인회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및 점포수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달리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결성과 자치기구는 자치기구의 신청에 의거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하며.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골목형상점가**상인회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지정에 동의홀 하는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를 비롯한 “구청장”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정신청은

1. 골목형상점가내 동의인 명부(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각1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를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악구 의원 1인과 유통·마케팅·도시계획·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관악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시 관악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 편의시설	건축물 : 층 동 화장실 : 개 주차장 : ㎡ 그 밖의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를 비롯한 “구청장”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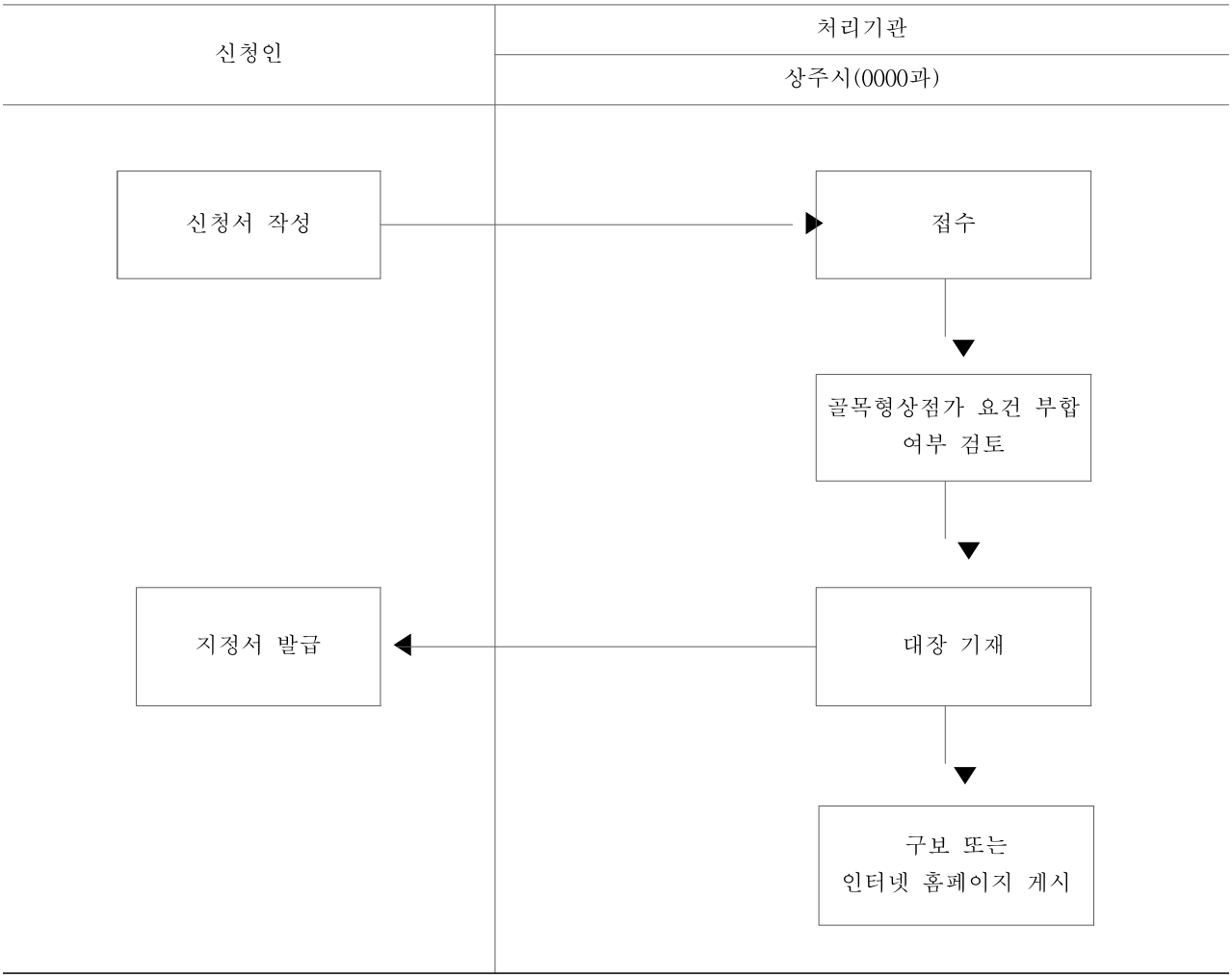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개요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내 동의인 명부(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각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상인회 등록증

1. 상인회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상점가명:
5. 업무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참조] 법령 근거

상권활성화구역 적합성 검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217호 일부개정 2019. 01. 08.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6.12

] [[시행일 2018.12.13]]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6.12

] [[시행일 2018.12.13]]

[본조신설 2009.12.30

] [[시행일 2010.7.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1. 5.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

개정 2014. 1.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4호

개정 2017. 8.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개정 2018. 8.2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 신규제정 2017. 07. 2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1. 5.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
개정 2014. 1.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4호
개정 2017. 8.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개정 2018. 8.2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

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며, 상권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100%를 지원하되, 지원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상권활성화 지원센터) ① 진흥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 내에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권활성화 외부자문단(이하 “외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 외부자문단의 구성·운영
2.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상권활성화사업을 실현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
4.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5.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사업
6. 해외 전문 상권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상권활성화사업 홍보
8.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외부자문단은 사업방향 및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승인신청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하 “사업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
3. 상권활성화사업 성과 평가
4. 기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지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장관은 3년마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의 추천)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승인신청서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추천 서류에 대한 검토)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미리 서류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
2. 상업·유통·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촉진사업 관리지침」제6조·제6조의1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장관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상권관리기구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비용

④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12조(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타운매니저의 임무) ① 제12조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2.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5.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② 타운메니저는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전결권을 갖는다.

1.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또는 일반수용비(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안내책자·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간행물구입비 등)로서 건별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로서 건별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5장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제14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승인) ①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제2조제5호에 의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지방청, 시·도지사 및 진흥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① 상권관리기구는 제14조에 의해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간 예산을 전용하도록 변경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국고보조금의 지급)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련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권관리기구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 진도보고를 받은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상권관리기구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사업비중 시설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잔액(이자 포함)을 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나. 상권활성화사업이 최종 종료된 때

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중단된 때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상권관리기구가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기간 중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보고)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간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 지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과관리, 포상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5인이내의 외부자문단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 신규제정 2017. 07. 2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

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부 칙[2017.7.26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서식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서식3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4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서식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서식6 청산종결 신고서

Ⅴ. 기대효과 및 기타 참고사항

1. 기대효과

1.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상주시 중심상권 침체에 따른 해결방안 및 고착화 문제 해결방안 마련
◦ 중심상권 활성화의 근간은 시설과 더불어 경영 선진화이며, 경영 선진화 중에서도 상인의식 미비에 따른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의식혁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상주시 중심상권의 공공재로서 역할 정립에 있음
◦ 지역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공익적 기능의 상주시 중심상권 정립
◦ 상인조직의 체계화 및 강소형 상인 육성, 대물림 기틀 마련

미래의 조직 및 핵점포 육성
상인규약정비
상인조직의 사회적 기업형 조직
상업적 관점에서 접근(역할에 대한 보상)

1.2 사업실행의 파급효과 및 성과

구 분		내 용
파급효과		◆ 중심상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심상권 중심의 제도화 정착 ◆ 활성화된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과제고
성과	단기	◆ 중심상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화 및 운영규정 마련 ◆ 상권별 진행사업을 통해 경쟁력 향상
	장기	◆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의 홍보·확산 ◆ 중심상권 구성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만족도 증대

◦ **상주시 서민경제의 사회적 공유 경제 공간**
◦ **상주시 지역문화의 생성과 발산의 문화 공간**
◦ **상주시 지역민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2. 기타 참고사항

2.1 참고사항

□ **상권활성화 사업**

◦ 정부정책 변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권 르네상스 즉 상권활성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 정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 그동안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1)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설명회 실시 예정

2) 사업공고

3) 사업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전준비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

□ **특성화사업 준비**

◦ 정부정책 변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특성화 사업의 전제 조건을 5대 역량강화(3대서비스혁신, 2대역량강화)에 두고 있음

□ **중심상권 시설현대화사업**

◦ 상주시 지역순환센터로 전환

□ **지역상인 역량 강화**

◦ 협동조합 + 협업화사업, 생활형혁신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 **기타 아이디어**

◦ 상주시 중심상권 내 지역상권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

◦ 상권활성화 육성대학 운영

◦ 합법화 : 지역순환센터 설치

◦ 지역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장벽해소 : 공동조리장 설치, 시장 내 로컬직매장 로컬푸드

2.2 불황 극복한 전통시장 비결

□ 수원 못골시장

○ 2019.3.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시장도 200m 남짓 이어지는 구간에 채소, 반찬, 고기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 해조류 점포에서 김 한 톳을 막 사서 나오던 한 주민은 **"못골시장은 같은 해조류라도 종류가 많고 크기도 다양해서 대형마트와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 못골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시장 평균 방문객은 평일 1만명, 주말이면 2만~2만 5000명에 달한다.**

○ 88개 점포가 연간 22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
점포 1개당 연평균 2억 5000만원어치 물건을 파는 셈이다.
작지만 강한 전통시장으로 생존한 덕분에 매년 전국에서 상인 8,000명이 찾아와 성공 비결을 배워간다.
이 시장이 활기를 찾은 건 상인들 스스로 변화를 택했기 때문이다.

○ **채소, 과일 등 1차 식품과 떡, 반찬 등 즉석 가공식품 위주로 품목을 바꿔 먹거리 하면 '못골 시장'이 떠오르도록 새롭게 포지셔닝했다.**

▮**시장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장 속 방송국 '못골 온 에어', 여성 상인들로 성된 '줌마 불평 합창단' 공연, 상인들이 고객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못골 요리교실' 등이 고객들 발길을 돌려놨다.**

▮**주차장 확충, 지붕 설치, 간판 정비 등 시설 현대화도 한몫했다.**

□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 야시장 명소	▶ 상인에 스마트폰 통역 교육

○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대구 근대골목과 연계된 관광코스와 국내 최대 규모 야시장 덕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에 선정됐다.**

▮ 시장입구부터 350m에 걸쳐 식품 매대 65개, 기념품 매대 15개로 국내 최대규모

▮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이곳 야시장은 젊은 연인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연일 붐빈다.

○ **평일 5만명, 주말이면 10만명이 찾는다.**

▮ 2년 10개월 전 개장한 이래 누적 방문객만 **2,000만명**을 넘어섰다.

▮ 대구시도 연 200만명 이상이 찾는 근대골목과 서문시장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30실 규모 한옥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매년 가을 한복패션쇼와 보부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문화 축제**도 벌인다.

○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은 **" 매월 한 번 상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인 통역 서비스 교육도 진행해 외국인들이 시장에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

□ **강릉 성남시장**

○ 2008년 문을 연 강릉 성남시장도 야시장 덕분에 지역 내 **'핫플레이스'**가 됐다. **청년 상인들을 중심으로 스페인, 필리핀 등 이국적인 먹거리를 파는 10여 개 점포가 인기를 얻자 인근 옛 강릉역 철길 용지에서 버스킹 공연도 열리며 이 일대가 문화광장으로 탈바꿈했다.**

□ **전주 남부시장**

○ 전주 최대 관광지 한옥마을과 인접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도 성공적이다.**
전국 최초로 2011년 문을 연 **남부시장 청년몰에는 식당, 선술집, 카페, 공예방 등 33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전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아 주말에는 손님들로 북적인다. 청년몰 인기에 남부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 **울산 수암시장**

○ **특화시장으로 탈바꿈해 활력을 찾은 곳도 있다.**
한우특화시장이 된 울산석유화학공단 인근 울산 수암시장이 그런 사례다.
막 구매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 속칭 **'초장집'**이 줄줄이 문을 열면서 노동자들 회식 장소로 떠올라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곳 점포 130여 개 중 한우 관련 점포가 33%에 달한다.
2017년 국내 유일한 한우 야시장으로 선정돼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이 열리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 **광주 송정역 1913시장**

○ **"전통시장에서 최소 30% 정도 상인이 교체돼야 품목도 바꾸고, 다른 상인도 변화에 동참하는 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광주 송정역 1913시장이 40여 개 점포 중 5개만 남았을 정도로 소멸되자 새로 기획하고 품목을 바꿀 수 있었다.
기존 상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면 소멸할 수 밖에 없다.

□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 전통시장이라고 모두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 **서울 마포구 망원 전통시장은 현대화된 편의시설, 다양한 식음료 콘텐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대형몰 부럽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 기존 노년층 고객은 물론 10·20대 고객까지 흡수하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모습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2.3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변신한 전통시장

□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마장 축산물시장의 **'쿠킹 클래스'** 시장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공을 세운 프로그램
시장에서 고기 구매부터 요리까지 한 방에!
마장 축산물시장은 제품의 품질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소비자는 즐거운 체험

○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마장 축산물시장!**

○ **마장 축산물시장은 맛보고 즐기는 것은 기본! 요리도 배울 수 있는 전통시장!**

○ 마장 축산물시장은 악취와 위생 그리고 미관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음
- 부정적인 인식을 지자체가 시설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노력(청결)으로 개선 되었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하였음

-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구도심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마장 축산물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은 물론 사회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도 활성화시킨 성공사례**

2.4 의식 혁신을 통한 전통시장 성공사례 시사점(전통시장과 의식혁신)

○ **첫 번째, 고객의 관점에서 관찰**
고객만족을 위해선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임!

○ **두 번째,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김치로 특성화에 성공했듯이 그 시장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고객이 매력을 느끼는 것임!

○ **세 번째,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고객의 욕구도 끊임없이 바뀜.
전통시장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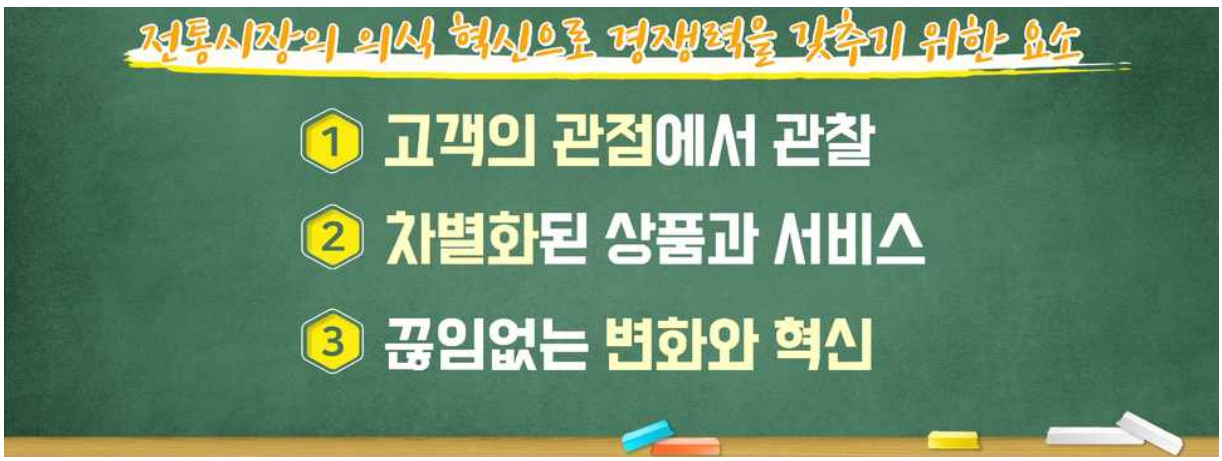

2.5 대표 컨텐츠 계획(예시)

구분	1단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입단계	2단계 (상권활성화를 통한) 성장단계	3단계 (관광거점지로서의) 발전단계	4단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정착단계
환경 개선 사업	· 고객편의시설 조성 · 시장안내판 · 구역별 간판 정비, 컬러 조닝 · 아케이드 정비 등 · 공공시설물 개선 · 기존 쉼터정비	· 고객편의시설 조성 (계속) · 주차시설 개선 ·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 · 야외공연장 조성	· 도로변 쉼터 조성 · 시민운동시설 조성 · 도심관광과 상주시 중심상권 연계계획 · 관광지와 연결계획	· 공원 조성 · 시장경관(야간) 정비 · 이색 가로수길 조성
고객 유치 사업	· 중심상권 브랜드 개발 및 상징 제작 · 구역별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 축제 및 이벤트, 세일행사 등	· 배송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시장연계 숙박, 음식 체험 상품 개발 · 주부 문화교실 운영 · 공동쿠폰, 상품권 개발 등 · 공통 홍보물 및 소식지 (계속) · 축제 및 이벤트, 세일행사 (계속)	· 배송시스템 운영 (계속) · 숙박 및 음식체험 프로그램 (계속) · 고객 대상 문화교실 (계속) · 공통 홍보물 및 소식지 (계속) · 축제 및 이벤트, 세일행사 (계속) · 학교와 문화콘텐츠 연결 계획	· 배송시스템 운영 (계속) · 숙박 및 음식체험 프로그램 (계속) · 고객 대상 문화교실 (계속) · 공통 홍보물 및 소식지 (계속) · 축제 및 이벤트, 세일행사 (계속)
상권 관리 사업	· 정기적 대청소 실시 · 노점구획정리 종합대책마련 · 전 구역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	· 시장 정기적 대청소 실시 (계속) · 노점정비사업 착수 · 청년창업	· 시장 정기적 대청소 실시 (계속) · 청년창업 (계속)	· 청년창업센터 유치 · 도시농업센터 유치
재개발 재건축 사업	-	-	-	-
기타 사업	· 상인대학 개설 및 운영 · 통합 매니저 채용	· 상인조직 구축을 위한 교육 (협동조합 등) · 상인 주축의 운영 주체 설립	· 시장관리, 운영지원 기구 설립	· 시장관리, 지원기구 운영을 통한 자발적 관리체계 마련

2.6 대표 컨텐츠 세부계획(예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시설		상징물 제작	• 중심상권 종합상징물 제작 • 구역별 상징물 제작 및 컬러 조닝
		야시장 조성	•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
경영	프로모션	브랜드 및 패키지	• 중심상권 공통 브랜드 및 CI 개발
		광고 및 홍보	• 구역별 공통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 축제, 상권 등 다양한 광고·홍보동영상 • 공동쿠폰, 상품권개발 등
	자생력 강화	공통마케팅기획	• 상주시 기업체 등과 공동마케팅 상권체험 행사 등
		상인커뮤니티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교육·세미나·워크숍	• 특화교육(협동조합) 프로그램 진행·선진지 견학 등
	축제 이벤트	페스티벌	• 구역별 공통 축제 및 이벤트, 세일행사 등
		관광프로그램	• 시장 연계 숙박, 음식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I.C.T 융합	배송시스템	• 배송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통합방송시스템	• 전 구역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SNS마케팅	• SNS·블로거단 운영
조직	사무국 운영	인건비	• 타운매니저, 보조매니저 인건비 등
		운영비	• 사무국 운영비(임대료/인테리어/PC장비/집기/비품 등)
공통경비		홍보비	• KTX, 우수시장박람회 등
		평가	• 사업평가
		회계정산	• 사업비 회계 정산